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4th November 2014

- WHERE IS GRACE CHANG?: 공유 사회 SOCIAL COMMONS* 2
- ABOUT WRITERS 2
- COVER STORY: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600 달러 상향 조정의 의미와 유의사항 3
- FTA NEWS: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의 원산지 증명 방식 5
- VOICES FROM THE FIELDS: 계란이 왔어요~ FTA 계란이왔어요 (2014 FTA 활용사례 최우수 수상) 8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10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㊸ 12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공유 사회 Social Commons*

장승희
대표 관세사

Los Angeles 의 다운타운에서 LA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Yellow cab 을 이용하면 $46.50+tip, 한인 택시를 이용하면 $35~40 입니다. 최종 선택은 UBER 택시가 되었습니다. $25 에 부동산 중개업을 main job 으로가진 중국계 청년기사로부터 LA 부동산 경기에 대한 소식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2008 년에 시작된 Airbnb 는 3 년만에 11 만개의 이용가능한 객실이 등록되었으며, 매일 새로운 방이 680 여개씩 추가로 등록되고 있다 합니다. 또한 2014 년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힐튼호텔체인과 인터컨티넨탈 호텔 체인의 전 세계에 걸친 하루치 객실 가동수를 연내에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아니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간의 공유, 서비스의 공유,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재능의 공유 등등.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신의 영역안에 소유하며 소비하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P2P(peer to peer) network 의 발달은 동등한 계층의 노드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수평구조를 이루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시킵니다. 수직 통합형 독점기업에서 제공하던 상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산업의 사회적 기업과 개인들사이에서 분산형태로 연결됩니다.

共有(공유)란 所有(소유)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보다는 협력에, 소유권보다는 접근권에 가치를 두는 공동체 의식은 공유사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无爲堂 장일순 선생은 1983 년 '더불어 사는 세상 한살림'이라는 도농직거래조직을 창립하였습니다. 共生이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며 각자를 긍정해 주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의 생명단위로 태양과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협동적으로 존재할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안목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내 소유로 하겠다고 갈라 가졌어요. 그러니 자연히 이상이 맞지않아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공유사회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기술과 정보의 발전만으로 등 떠밀려 갈 수는 없습니다. 공동의 이익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서로 연결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이에겐 밥을 주고, 엎어진 자는 일으켜 주는...그 사람이 나를 도운적이 없어도.."

즐거운 11 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레미 리프킨『한계비용 제로 사회』
** 무위당 장일순『나락 한알 속의 우주』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ABOUT WRITERS

COVER STORY –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600 달러 상향 조정의 의미와 유의사항

이 길 준 관세사
(gj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2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FTA News–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의 원산지 증명 방식

이 동 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Voices From The Fields-
계란이 왔어요~ FTA 계란이왔어요(2014 FTA 활용사례 최우수 수상)

권 선 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 본사 컨설팅본부 FTA 파견팀
-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 FTA 원산지 컨설팅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 입 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1 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RULINGS ㊸
구매자가 지급하는 연불이자의 실제지급가격 공제 여부 (HQ 548332, 2003.10.31)

양 원 아 관세사
(waya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Cover Story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600 달러 상향 조정의 의미와 유의사항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해외 여행자의 씀씀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 년 이후 국민 소득이 6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화 400 달러로 변함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6 년 만인 지난 9 월 5 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미화 400 불에서 미화 600 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과 여행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면세한도가 미화 600 불로 상향 조정된 반면에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다. 이들 품목은 기본 면세 금액과는 별도로 1L 이하 술 한 병(미화 400 불 이하),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ml 이하까지 추가로 반입할 수 있으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즉, 미화 600 불 와인은 미화 600 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다.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 미화 600 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그 금액에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미화 800 불인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600 불을 공제한 미화 200 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내야 한다.

면세한도 증가와 더불어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여행자가 면세한도(미화 600 불 이하) 및 1 인당 면세기준(주류, 담배, 향수)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여행자의 자진신고율은 여전히 낮다. 이에 정부는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게 세액을 경감해주고, 무신고자에게는 더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구분	내용		비고
기본 면세	미화 600 불 이하		농축수산물, 한약재 등은 별도로 규정
별도 면세	술	1 병	1L 이하이고 미화 400 불 이하 한정
	담배	궐련 200 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g	2 종류 이상 반입시 1 종류로 한정
	향수	60ml	

한편, 여행자 휴대품은 FTA 에 따른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화 1000 불 이하인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물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을 첨부한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단, 한-아세안 FTA 는 미화 200 불 이하). 다만, FTA 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내국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여행자가 미화 800 불인 여행자 휴대품을 반입시 FTA 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가 0 원이더라도 내국세는 미화 200 불(미화 800 불-미화 600 불=미화 200 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과 FTA 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 여행자들의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처벌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소비를 하였는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하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원산지 표기 물품이라면 구매영수증을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분 좋은 여행으로 기억 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길 준
(gjlee@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의 원산지 증명 방식

1. 개요

2014 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및 아세안을 비롯한 9 개 국가와의 FTA 협정을 발효 중에 있고 콜롬비아,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FTA 의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한데, 원산지 증명 방식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크게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기관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이고, 자율발급은 기관의 개입 없이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서명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기관발급 혹은 자율발급 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식, 발급자 및 언어 등은 각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 및 호주와의 FTA 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FTA 별 원산지 증명방식]

	미국	칠레	페루	EU	EFTA	터키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C/O 발급방식	자율발급 포괄증명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C/O 유효기간	4년 포괄(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서식	자율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방식			통일서식		각국 통일서식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기관(페루: 통상관광부, 한국: 세관, 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 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사용언어	영어,한글	영어		한글, EU 당사국언어	영어				
사용회수	12개월 이내 포괄발급가능	1회 사용원칙							

2. 한-호주 FTA 의 원산지 증명 방식

한-호주 FTA 에서 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자율발급 방식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호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발급 방식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 후 2 년이고 1 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증명서는 영문으로만 작성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표준서식도 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 천불 이하일 때, 호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호주화 1 천불 이하일 때 각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한-캐나다 FTA 의 원산지 증명 방식

한-캐나다 FTA 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 후 2 년이고 1 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12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수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될 수 있다. 현재까지 협정에서 정하는 표준서식 등은 없으며 발효 이전에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양국 공히 미화 1 천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부속서 3-라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한-호주, 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방식]

	호주		캐나다	
C/O 발급방식	한국	자율발급	자율발급	
	호주	기관발급		
C/O 유효기간	2년		2년	
서식	표준서식		미정	
발급자	한국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	기관		
사용언어	영어		한국	한글, 영어
			캐나다	영어, 불어
포괄기간	유효기간 이내 포괄발급가능		12개월 이내 포괄발급가능	

4. 원산지 검증

FTA 원산지 검증은 그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뉘는데, 수입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검증이라 하고, 수입국 세관의 요청으로 수출국 세관에 요청하여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증을 하는 것을 간접검증이라 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에서는 모두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FTA 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에서 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일정 기간 이내에 수 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다소 방만해질 수 있다. 하지만 두 협정 모두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언제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산지 판단의 기초자료들을 꼼꼼히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동일한 물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없이도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건별로 원산지가 변동 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포괄기간 설정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계란이 왔어요~
FTA 계란이왔어요
(2014 FTA 활용사례 최우수 수상)

지난 2014 년 10 월 16 일 무역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한 대창특수기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창특수기계는 계란 선별기 및 세척기를 생산하고 있고, 직원 8 명의 소규모 회사이다. 계란선별기 시스템의 생산자는 대창을 포함하여, 전세계 겨우 6 개의 maker 가 있으며, 대창은 현재 해외시장 2%를 점유하고 있는 유망수출 강소기업이다. 지난 9 월달에 대창특수기계는 필리핀 바이어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능력을 어필해 25 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FTA 를 활용해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FTA이해하기

대창특수기계 해외영업 이사님이 지난 5월달 대전FTA활용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무척 상기된 표정으로 "AK FORM이 무엇이냐, 11월달까지 준비될 수 있느냐"고 조급히 물었던 기억이 난다. 제조시설을 갖춘 생산자임을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핵심부품이나 가격비중이 높은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다. 대전FTA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노하우가 생겼다면, FTA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FTA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기 보다, 해당 수출업체의 수출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다. 처음부터 세번변경기준 (CTH)이나 부가가치기준(RVC, MC)과 같은 복잡한 용어에 현혹되면, FTA를 무척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HS CODE 8433.60, 수출국은 필리핀(한-아세안 협정)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치기준(RVC 40%)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업체를 방문하여 구입하고 있는 원재료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보다 충족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다. 수출물품과 같은 4 단위 세번(HS CODE)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재료가 있다면, 해당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FTA 원산지 증명서 준비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이사님께 설명을 드렸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만, 기계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철강제의 body frame 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창특수기계는 철강재료를 구매하여 레이저가공업체에 무상사급으로 제공하고 가공비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수출업체가 해당 원재료의 매입정보를 관리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가공업체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대창특수기계의 수출물품은 가장 간단한 FTA 판정모델이 적용되어,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지 않고, 수출업체가 작성하는 서류로만 FTA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 이제 대창 영업이사님은 수출오더를 협상중인 해외바이어에게 AK 원산지증명서를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음을 자신있게 통지할 수 있었다.

FTA정부 지원 활용하기

가장 간단한 FTA판정모델이 적용된다고 해도, 수출업체 담당자가 원산지소명서 등 몇 가지의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창특수기계는 OK FTA컨설팅이라는 밀착지원을 신청하여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현재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물론, FTA활용지원 사업별, 주관기관별 많은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이 많다. 얼마 전에는 FTA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까지 나왔으니, 업체 담당자분들은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출전문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외부의 지원에만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우리 대전 FTA 활용지원센터는 대전세관,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와 협약하여 FTA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수강생 중에 3 학년 학생을 대창특수기계에 추천하여 채용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FTA체계 수용하기

대창특수기계가 이번 2014 년 FTA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던 것은, FTA 관세율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률을 제고한 사실에만 있지 않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수출부서의 업무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사적 관점에서 내부문서관리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대창특수기계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해외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작하였지만, FTA 를 이해하면서 내부통제(문서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써 FTA 를 수용하였다.

수출자는 서류로써 FTA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하고,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5 년간 보관하여 할 의무가 있다. 대창특수기계는 FTA 를 기회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수출건수(Lot number) 당 원자재 발주 및 입고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문서화되어 있지 않던 BOM 을 정립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3D 이미지 PART LIST 까지 완비하여 수출영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활용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창특수기계 유창수 대표님은, OK 컨설팅을 맡은 신한관세법인의 도움으로 FTA 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셨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및 '14.1.31 개정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안 제13조제2항)

나. 통제품목의 개정이 없고, 신청품목의 규격 등의 변경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도록 개정 (안 16조)

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이행을 위해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신설(안 제17조의2)

라. WA 전략물자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정부의 수입목적확인서가 있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갈음 (안 20조)

마. 정보보안(암호화)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예외대상 확대

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11호)

2)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소매상"에서 "소매판매처"로 개정하여 제조업자의 소매활동도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별표2)

사. 수출된 SW의 단순 사용기간 연장,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수출허가 면제 신설(안 제26조제1항제12호)

아. 수탁가공 무역 수출허가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 정비 (안 29조)

자.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허가 품목(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통제대상 국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안 별표2의2)

차. CP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신설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안 별표 19)

카. 기타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

3. 시행일자 : 2014년 10월 2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ㅇ '등록규제 폐지', '규제개혁'을 통해 수출입기업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전자문서 서식 삭제

ㅇ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는 수출자나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4조)

ㅇ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0조)

※ 전자문서 표준안에 해당되는바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운영

(2)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간소화

ㅇ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수입자의 부담 경감(제35조)

※ 우리청 2014년 규제개혁 이행 과제

(3) 기타 조문 정리

ㅇ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물품 선적후에 발급할 때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3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할 때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이내에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17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3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할 때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3. 시행일자 : 2014년 11월 11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구매자가 지급하는 연불이자의 실제지급가격 공제 여부 (HQ 548332, 2003.10.31)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자 물품 대금 외 별도로 지급하는 연불이자는 물품 구매 대가가 아닌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세평가 목적상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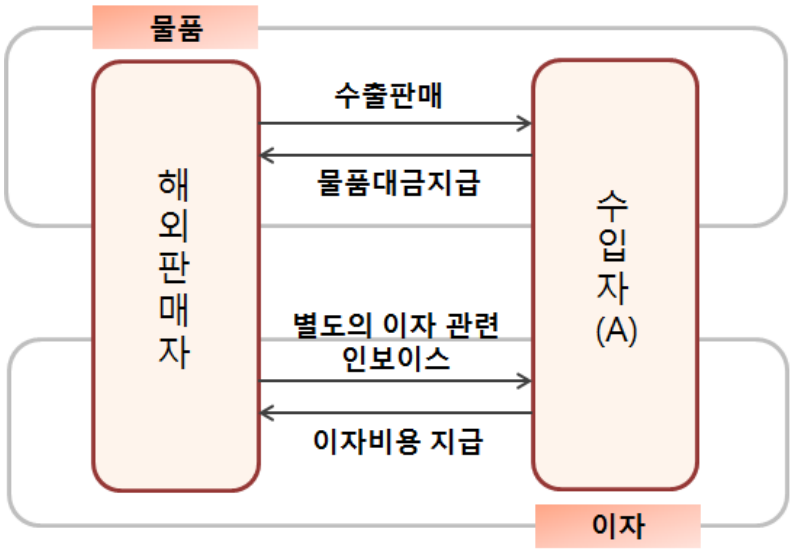

☐ **거래사실(Facts)**

- 미국 수입자 A 는 물품가격에 추가적으로 이자비용을 해외판매자에게 지급함.
- 이자비용은 대금결제를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90 일 조건으로 하는 대가임.
- 본 이자비용은 별도의 송장상에 표시되어 있음.
- 해당 송장은 이자비용과 물품가격 간 관계, 이자비용 산출 근거 등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수입자 A 는 10 건의 이자비용 지급 관련 서류를 미국 세관에 제출함.
- 세관에 제출된 서류는 구매대리인 B 가 수입자 A 와 해외판매자간 이자비용 지급 관련 계약을 확인했다는 증빙이며, 1997 년부터 2001 년까지의 월 이자율(5 년간 동일)을 명시하고 있음.

☐ **쟁점(Issues)**

1.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가?
2. 이자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가?
3. 이자비용이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었으나, 해당물품이 계약일 이전에 수입되는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U.S.C. §1401a(b)(1))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액을 의미한다. (19 U.S.C. §1401a(b)(4)(A)) 연불이자는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쟁점 1, 쟁점 2, 쟁점 3 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지급가격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 사례의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가격과 구분되나,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쟁점 3 관련하여 해당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서면에 의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자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1997 년 이후 수출국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A 는 5 년(1997 년~ 2001 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자율은 수출국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입자 A 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 불가하다.

☐ **결정(Holding)**

1.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자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 해당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자비용이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었으나, 해당물품이 계약일 이전에 수입되는 경우 이자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양 원 아
(wayang@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www.ftagateway.co.kr
www.customsservice.co.kr

통권 74 호 | 발행일 2014 년 11 월 1 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박민아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Tel 02-542-1181 Fax 02-540-2323